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 제안이유

-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-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함.

 주요골자

- 조례명 중 “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”를 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로 변경함.
-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도지사와 도의회가 각각 2인을, 공사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으로 구성함(제3조제1항).
-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(제3조제2항)
 - 경영전문가, 경제관련단체의 임원,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, 공인회계사,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위원회는 사장의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(제5조)
- 사장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(제8조제2항)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·공단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(이하 "사장"이라 한다)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도에서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
2.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3.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
4. 공인회계사
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당해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도 소속 공무원(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가 사장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8조(임원)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

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시행령

제56조(사장 및 감사의 임면) ①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 한다.

1.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
3. 중대한 파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6조의2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법 제58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추천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⑦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제56조의3(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)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<p>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정 1999. 8. 6 조례 제2509호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 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장(이하 "공사의장"이라 한다)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 ②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.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 단, 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공사의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.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.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. 공사의 장 임명대상 지방공사의 감사 1인 <p>②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문개정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·공단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(이하 "사장"이라 한다)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도에서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.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.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<p>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영전문가 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. 공인회계사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현행	개정(안)
<p>제4조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제5조(위원의 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.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·직원 <p>제6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공사의 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된다.</p> <p>제7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/p> <p>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③당해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도소속 공무원(도의회위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④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⑤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장의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(안)
<p>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과장이 된다.</p> <p>제8조(공사의 장 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공사의 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</p> <p>③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</p>	<p>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.</p> <p>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8조(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9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공사의 장 후보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부 칙	부 칙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</p>